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6. 21.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6월 8일

나. 발의자: 김화영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2년 6월 16일

라. 상정일자: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2. 6.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화영 의원)

가. 제안이유

-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항목 신설(안 제5조)
 -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지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본 조례안은

-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제2호에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항목에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를 지원사항에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은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89
----------	-----

발의년월일: 2022년 6월 일

발의자: 김화영 의원 외 4명

1. 제안이유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항목에 “통합공공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지원 사항 신설
(안 제5조제2호하목)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2. 6. 8. ~ 6. 14.):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별표 1 제1호나목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목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50	50	
3. 경로당의 보수	50	50	
4.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5.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50	50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50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9.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10.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1.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2.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60	40	
13. 단지 내 수목 전기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50	50	
14. 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50	50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1. (생 략)</p> <p>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p> <p>가. ~ 파. (생 략)</p> <p><u><신 설></u></p> <p>하. (생 략)</p>	<p>제5조(지원대상) -----</p> <p>-----</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p> <p>-----</p> <p>가. ~ 파. (현행과 같음)</p> <p>하. <u>통합공공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u></p> <p>거. (현행 하목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5조 관련)

1. 지원비율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 고(증감률)
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50	50	
3. 경로당의 보수	50	50	
4.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5.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50	50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50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9.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10.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1.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2.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60	40	
13.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50	50	
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5조 관련)

1. 지원비율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지 원 사 업	구 분담률	공동주택 분담률	비 고(증감률)
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5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점수에 따라 제2호와 같이 지원금 증감 소형 임의관리대상은 지원금의 10% 증액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50	50	
3. 경로당의 보수	50	50	
4. 실외 운동시설의 보수	50	50	
5.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	50	50	
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개선	50	50	
7.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50	50	
8.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50	50	
9.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50	50	
10.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 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1.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50	50	
12. 공동주택 단지 내 옥외보안등 전기료	60	40	
13.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 및 조경시설 보수	50	50	
14. 통합공공안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50	50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0	50	